

나) 인사발령통지서 등(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8조)

- (1) 교육공무원을 전보, 강임, 면직, 징계, 직위해제, 휴직, 복직, 호봉재획정, 승급, 전출,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, 위촉 또는 해임, 해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[별지 제22호 서식]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직위해제, 직권에 의한 면직·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할 때에는 [별지 제23호 서식]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령 [별지 제5호 서식]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(3)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,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서 할 수 있다.
- (4)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5조)
- (5) 발령대장(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9조)
- (6) 인사보고(동규칙 제20조)
- (7) 인사발령통지(동규칙 제22조)

## 2) 처리과정 및 절차

시행기관	처리 내용	처리 방법	유의사항
학 교 (교육지원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직위해제 해당 사안 검토</li> <li>◦ 해당사안 보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타당성 여부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사·교감 : 학교장→교육장에게</li> <li>◦ 교장 : 교육장→교육감에게</li> </ul>
교육지원청 (도교육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사발령 및 통지</li> <li>◦ 결과 처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사기안 및 결재</li> <li>◦ 인사발령통지서 교부</li> <li>◦ 발령대장, 인사기록 카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사·교감 : 교육장→학교장에게</li> <li>◦ 교장 : 교육감→교육장에게</li> </ul>

## 3) 구비서류

### 가) 인사기안문

나) 인사발령통지서(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8조 [별지 제22호 서식])

다)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

라) 기타 서류